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20.9.29. (가칭) 중구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 어르신들의 건강영양 증진 및 유지를 위해 안정적 식사제공, 영양관리 예방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르신 영양건강증진 사업의 정의 (안 제2조)
 - 어르신 영양 건강증진 사업의 용어 정의
- 나. 어르신 영양건강증진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안 제16조의2)
 -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업 추진 방법, 관리체계 등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중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전화 : 3396-5366, FAX : 3396-8730, E-mail : js903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어르신 영양 건강사업”이란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 (어르신 영양 건강사업 지원)

- ① 구청장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식사지원, 영양 관리 예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당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 상 만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③ 어르신 영양·건강 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르신 영양·건강관리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